

도-도의회, 계수조정 조정안 놓고 '진통'

2차 4·3희생자 보상금 내년 1월부터 접수 대상자 2500명... 도·행정시·읍면동서 신청 가능

도의회 예결위, 15일 본회의 전까지 완료 계획 올해부터 증액분 비공개... '깜깜이 심사' 비판

내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제주도도와 도의회 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경호)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뒤, 지난 12일부터 계수조정에 착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5일 본회의 전까지 계수조정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예산안의 감액과 증액을 놓고 제주도도와 도의회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도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제주도 예산안과 관련해 210여개 사업에 505억원 가량 감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은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억8000만원,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43억원,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등 체육시설 시설비 17억원 등이다.

반면 상임위원 증액 내역은 지난해까지 공개가 됐었지만, 올해부터 도의회가 비공개 방침을 세우면서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더욱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증액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둘째날에야 제출이 완료되는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결위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5일까지 계수조정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제주도도와 도의회간 진통이 이어지면서 양측이 본회의 이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를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마지막 정례예산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자치도의 올해 최종 예산은 기정 예산 7조2432억원보다 5451억원(7.5%) 증가한 총 7조7883억원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701억원, 특별회계는 1750억원이 증가했다.

제주도교육청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으로 기정예산 1조6524억2000만원보다 571억6000만원 늘어난 1조7095억8000만원을 편성했다. 이태윤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제주4·3사건 2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500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제주4·3사건 보상금 신청은 지난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제주4·3중앙위원회에서 결정된 신청순서에 따라 총 6차례로 나눠 접수를 받고 있는데 1차 보상금 신청 대상자 2117명에게 6월 1일~12월 31일 보상금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희생자별 보상금 신청차수는 4·3 종합정보시스템이나 도·행정시·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의 경우 본인이며,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엔 유족 결정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민법상 상속권자다.

2차 신청 대상자 2500명은 2023년 1월 2일부터 가까운 도·행정시·읍면동 어디나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도의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신청대상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달 현재까지 2500명 희생자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청구권자는 2

만 9072명으로 희생자 1인당 청구권자는 평균 12명으로 확인됐다.

1차 대상자 2117명 중 보상금 신청자는 1957명(92%)이며, 제주도는 지금까지 5차례 실무위원회 심사를 통해 1631명에 대해 중앙위원회에 보상금 지급결정 심의를 요청했다.

중앙위원회는 지금까지 2차례에 걸쳐 904명의 희생자의 보상금 심의를 마무리했으며, 이 중 4·3 관련 국가유공자 및 9000만원 이상 국가배·보상금 수령자 7명을 제외한 897명에 대해 739억원의 보상금을 결정했다. 12일 현재 희생자 기준으로 820명에 488억원의 보상금이 신청됐으며, 이 중 400명 239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한편, 지난 중앙위원회 제4차 보상심의분과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상속인은 보상금의 지급 결정 신청 또는 지급 청구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때 그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상금은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포기된 상속분의 비율만큼 지급하게 된다. 고대로그자

동물사랑교육 조례안 '눈길' 도의회, 고의숙 의원 대표 발의



도내 학교에서 학생들이 동물 보호와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이끄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의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 사례는 2.2배나 증가하고 있고, 제주지역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에 대한 수법과 잔혹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고의숙 의원은 "현 실태를 감안할 때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과 인도적으로 동물을 대하는 태도와 방법 등을 알고 동물과 사람이 친밀함을 느끼며 공감과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물사랑교육이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태윤기자 ity9456@ihalla.com



의장실 향하는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해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예산안 국회 통과 즉시 집행 준비 만전" 윤 대통령, 국무회의서 내년도 정부예산안 관련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법정기한을 넘겨서도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국회 통과 즉시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 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심의 상황과 관

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 2일)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세계 개편안은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생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세계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서울=부미현기자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슬로건 공모 도, 1월 12일까지 접수 ... 추념식 메시지로 활용

제주특별자치도는 2023년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을 대표하는 핵심 메시지로 활용하기 위해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참신한 슬로건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13일부터 내년 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next0418@korea.kr) 받는다.

슬로건은 20자 내외로 1인 2건까지 접수할 수 있고, 4·3의 아픔을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로 승화해 온 제주인의 평화 애호의 마음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으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기간 내 접수된 공모해 명확성, 참신성, 완성도 3개 기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

과를 내년 2월 10일까지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누리집(www.jeu.go.kr) 도정소식란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된 슬로건은 홍보 아치, 홍보탑, 현수막, 추념식 안내책자, 영상 등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된다.

한편, 제75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2023년 4월 3일 제주 4·3평화공원 위령제단 및 추념광장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추념식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11월 제75주년 추념식 준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추념식은 추모와 문화가 어우러진 경건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로 연출할 계획이다. 고대로그자 bigroad@ihalla.com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 안내

제주4·3사건의 진상 규명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를 추가 접수하오니, 해당자는 신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

- 1 신고 기간** 2023. 1. 1. ~ 2023. 6. 30. (6개월간)
- 2 신고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내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 : 현주소지 또는 4·3사건 당시 거주지의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 타시·도 거주 재외도민 : 당해 시·도 소재 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신고
 - 외국 거주 재외도민 : 재외공관(미·일) 및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신고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로 우편 신고

※우편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우)63122
- 3 신고 대상**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 희생자 : '47. 3. 1.을 기점으로 '48. 4. 3. 발생한 소요사태 및 '54. 9. 21.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희생당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 및 수형인
 - 유족 :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다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 1명
- 4 신고자** 희생자와 유족, 형제자매, 친·인척 및 제3자도 가능
- 5 신고 방법**
 -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읍·면·동 민원실, 타시·도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대한민국민단, 재외공관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신고마감일 우체국 소인까지 유효)
 - 신고서에 첨부할 증명서류
 - ① 희생자 신고 :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 ② 유족 신고 : 유족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결정통지서
 - ③ 후유장애인 신고 : 국립중앙병원, 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 1부, 희생자신고서, 유족명단,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신청사유 소명자료
 - ④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희생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는 경우에 한정함)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하여 들은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보증서 제출
 - 4촌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치르거나 무덤을 관리하는 사람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 외국거주자로서 재외공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도 2인 이상이 작성한 보증서 제출

문의처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제주4·3사건처리과(044-205-6564, 6562, 6563)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064-710-8434-8436) 제주시 자치행정과(064-728-1961~1966), 서귀포시 자치행정과(064-760-3991~3993) 제주도내 읍면동 4·3업무담당